

# 2023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직원(신입) 공개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 ■ 채용대상

직급	직군	분야	채용인원	주요업무	관련직무
7급 (신입)	행정	행정	1	· 행정·경영관리(경영지원) 업무 등	경영지원 주택관리
		행정(장애인)	2	·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업무 등	
		기계	2	· 공공임대주택 기계분야 건설사업관리 업무 및 주택건설 기계분야 설계업무 등	주택관리 건설사업관리 소방안전관리 현장안전환경개선
		소방	1	· 공공임대주택 안전관리 및 소방관련시설 유지관리 등	
		건축	1	· 공공임대주택 시설공사 하자관리 및 수선민원 발주공사 진행 등	
	영업	물류관리	1	· 도·내외 물류운영 관리 등	물류관리
	생산	유틸리티	1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등	유틸리티보전관리
		유틸리티(교대)	1	· (교대근무) 유틸리티 운영 등	
		안전관리	1	· (교대근무)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현장안전환경개선
	연구	품질연구	1	· 신제품 패키징 디자인 개발 및 개선 업무 등	품질연구
		품질보증	1	· 제품 클레임 대응 및 예방관리 업무 등	품질보증

## ■ 자격요건 ※ 자격요건은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함

### ○ 전 분야 공통요건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제주 거주지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도내 고교 졸업자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 우리공사 인재상에 부합되는 자 (인성 / 창조성 / 전문성 / Globality)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군필자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분야별 추가요건

직급	직군	분야	추가요건
7급 (신입)	행정	행정	-
		행정(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 2호에 의한 자로 해당 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기계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축설비기사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
		소방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설비(기계/전기)기사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
		건축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
	영업	물류관리	-
		유틸리티	·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설비보전기사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
	생산	유틸리티(교대)	· 설비보전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용접기사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
		안전관리	·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
		품질연구	· 제품디자인, 산업디자인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연구	품질보증	· 식품, 생물, 화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생명공학, 소재공학, 화학공학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 가점사항

구분	가점대상	가점
1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10%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	적성검사 만점의 5% (직무수행능력테스트 대상자인 경우 총점에 대한 만점의 5%)
3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 ※ 모든 가점은 만점의 60% 이상 득점 시 반영하되,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40% 이상 득점 시 가점 부여함.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점 미부여함.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기한 내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을 적용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함.
- ※ 장애인 별도 채용분야의 경우 2항의 가점은 미부여 함.

## ■ 서류제출

- 제출기간: 2023.03.31.(금) ~ 04.06.(목) 18:00 까지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
- 제출방법: 원서접수 사이트 온라인 제출 (PDF 파일로 제출)

직급	분야	제출서류
전 분야 공통		<전 분야 필수 제출>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및 주소지 변경내역 표기) ◦ 제주 소재 고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대상자에 한함)
		<가점대상자 제출서류> (대상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사실 확인서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7급	행정	추가 제출서류 없음
	행정(장애인)	◦ 장애인 사실 확인서
	기계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소방	
	건축	
	물류관리	추가 제출서류 없음
	유틸리티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유틸리티(교대)	
	안전관리	
	품질연구	◦ 졸업(학위)증명서 - 관련학과(제품디자인, 산업디자인) 학사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품질보증	◦ 졸업(학위)증명서 - 관련학과(식품, 생물, 화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생명공학, 소재공학, 화학공학) 학사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 ※ 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받아 제출
- ※ 자격요건에 명시된 관련학과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학위(졸업)증명서를 제출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졸업학과가 관련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학과에서 발급한 “우리 대학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기재된 OO 분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합격하여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분야별 전형절차 및 전형별 합격배수

- 7급 (행정/행정(장애인)/기계/소방/건축/물류관리/유틸리티/유틸리티(교대)/안전관리/품질연구/품질보증)

<b>필기전형</b> (인·적성검사) + (직무수행능력테스트)	▶	<b>서류전형</b> (자격요건확인)	▶	<b>토론·역량면접</b>	▶	<b>최종(인성)면접</b>
3배수		적격자 전원		2배수		1배수

- ※ 해당배수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적성검사/직무수행능력테스트의 경우 동점자 발생으로 선발배수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함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최종면접 불합격자 중 70점 이상 획득자 전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고득점자 순 예비합격자를 운영**
- ※ 전형별 Zero base 운영

## ■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공고일시: 2023. 3. 15.(수)
- 원서접수: 2023. 3. 31.(금) ~ 4. 6.(목) 18:00 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접수
  -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성별, 나이, 가족사항 등에 대한 사항 기재를 금함

## ■ 전형별 주요사항 <※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며, 전형별 Zero base>

- 인성검사 (적·부 판정)
  - 개인의 성격 및 특성을 심리적 과학적으로 파악 분석 (200문항 30분)
- 적성검사 및 직무수행능력테스트

구분	적성검사	직무수행능력테스트
평가 항목	공간지각, 도형추리, 수열추리, 언어이해, 언어추리, 응용계산, 자료해석 등	상황판단능력, 시사상식 등
시험 시간	50문항 60분	25문항 25분
합격 기준	• 과목별(적성검사, 직무수행능력테스트) 40점 이상, 최종 평균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자순 선발 ※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며 나머지 절사 ※ 동점자 발생으로 선발배수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함	

- 서류전형 (적·부 판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류전형 심사위원이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
- 토론·역량면접
  - 다대다(多對多) 면접
  - 운영방식: 토론주제 제공 ▶ 면접 준비 ▶ 토론면접 + 역량질문
  - 주제방향: 분야별 직무·사업 등과 관련한 주제 또는 찬반이 나눌 수 있는 일반적 주제

- 평가기준: 논리적 사고(30), 설득력(30), 직무 적합성(20), 배려적 의사소통(20) 등
- 최종점수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배수 범위 내 선발
- 동점자 처리방법: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 필기전형 고득점자 → 평가기준 중 '논리적 사고' 항목 고득점자

### ○ 최종(인성)면접

- 다대다(多對多) 면접
- 평가기준: 사고와 자세(30), 청렴도 및 신뢰도(20), 책임감 및 적극성(20), 협업성 및 희생정신(20), 예의·품행(10)
- 최종점수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배수 범위 내 선발
- 동점자 처리방법: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 토론·역량 면접전형 고득점자 → 평가기준 중 '사고와 자세' 항목 고득점자

## ■ 전형 일정(예정)

일정	전형일정	비고
3. 15.(수) ~ 4. 6.(목)	공고	
3. 31.(금) ~ 4. 6.(목)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4. 14.(금)	필기전형 장소 공고	
4. 22.(토)	필기전형	
5. 4.(목)	필기전형 결과발표	공사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이트
5. 10.(수) ~ 5. 11.(목)	서류전형	
5. 16.(화)	서류전형 결과발표	공사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이트
5. 24.(수)	토론·역량면접	
5. 29.(월)	토론·역량면접 결과발표	공사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이트
6. 2.(금)	최종(인성)면접	
6. 7.(수)	최종합격자 발표	공사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이트
6. 8.(목) ~ 6. 14.(수)	임용등록	
6. 26.(월)	임용(예정)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전형은 제주에서 실시되오니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별 공고 시 확정일정을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람.
- 응시자 모집분야 중 1개 분야에만 응시가 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공공기관 지원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타 공공기관에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접수 시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안내메일이 발송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지원서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근무지는 제주도 지역이며, 입사 후 제주 지역 거주 및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교대근무인 경우 4조2교대 운영에 따른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 (예시1) A조: 09 ~ 21시, B조: 21 ~ 09시, C조 : 휴무, D조 : 휴무
- 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필기전형을 실시하되, 자격요건 확인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 필기전형 결과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
- 공사 사정에 따라 임용 후 발령 시 분야 및 직군 변경 가능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허위, 제출서류 위조, 인사청탁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해당 분야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수습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수습평가 결과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7급 유틸리티, 유틸리티(교대), 안전관리, 품질연구, 품질보증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0조, 먹는물 관리법 제29조 등에 의거 건강검진 결과 부적격 판정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근무 불가능한 질병)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소화기계통 전염병, A형 간염, 살모넬라, 쉬겔라, E형 간염 등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최종면접 불합격자 중 70점 이상 획득자 전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운영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 시 반환하며, 180일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함
- 기타 문의 및 이의사항은 제주개발공사 인사교육팀(☎ 064-780-3514)으로 연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병역법」에 따른 병역기피자

### 〈직무별 주요과업〉

직무	주요과업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경영, 홍보기획, 노사협력, 사회공헌 업무</li> <li>· 기획, 경영혁신, 인사, 교육, 총무, 구매, 감사 업무</li> </ul>
주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주택 매입 업무, 안전진단 및 멸실에 관한 업무, 임대주택 시설물 유지관리</li> <li>· 각종 공과금 및 납입금 관련 업무</li> </ul>
건설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 업무, 기획설계 및 타당성 분석 업무, 설계업무(인허가포함), 시행 및 관리</li> <li>· 하자보수, 하자보수 및 토목시설물 관리</li> </ul>
소방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시설 법정 점검 및 대외기관 소방검사 수검 (법정선임)</li> </ul>
현장안전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건설안전 관리 감독 / 안전보건, 환경, 소방, 재해·재난 등 안전관리계획 시행 및 점검</li> <li>·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반활동 업무 / 개발사업본부 건설안전 관리 기획 및 조정</li> <li>· 안전보건 관련 제반활동 시행 / 폐수 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방지시설 관리(법정선임)</li> <li>· 소관업무 작업안전·환경 법정관리업무 / 안전보건 관련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및 운영</li> </ul>
물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운행사 운송차량 관리 / 선입선출 등 물류 로케이션 관리 / 성수기·비수기 재고 운영 방안 수립 및 관리</li> <li>· 완제품 입고, 공장 출고, 판매 운송 및 검수 체계 수립·운영·개선 관리</li> <li>· 장비보관·파손재고 등 회수 물류 관리 / 재고·운송 실적 분석 및 물류비용 관리</li> <li>· 거점별 적정재고 운영 및 수급 관리 / 공동물류대행 업무 등 도내 기관·기업 물류관련 협력 업무</li> <li>· 도내 배송서비스 대행 업무 / 물류거점별 보관·운송·하역 품질 관리 및 보관환경 개선</li> <li>· 지게차, 팔레트 등 물류장비 관리</li> </ul>
유틸리티보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 내 공조설비 관리 / 공장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업무</li> <li>· 공장 전력설비 관리(시설물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 보일러·유류·차량 등 관리</li> <li>· 유틸리티 보수 이력관리 / 유틸리티 설비 재산관리</li> <li>· 유틸리티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 유틸리티 작업 표준서 제·개정</li> </ul>
산업안전보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물품구매 규격 설정업무 / 안전보건 관련 안전장치 및 보호구 규격 승인</li> <li>· 안전관리 규칙 준수여부 지도·점검 / 안전관리 규칙 준수여부 지도·점검(현장안전관리자 운영)</li> <li>· 산업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장별 운영 조정업무</li> <li>· 안전보건·환경·소방·재해·재난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li> <li>· 건강관리실 운영 및 관리 / 건강증진·검진계획수립 및 시행(직원배치 전/후·특수건강·상수도검진)</li> <li>· 산업안전보건 규정 관리·운영 /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지도·지원</li> <l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지도·지원</li> <li>·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관리 / 안전사고 사전예방 계획 수립 및 준수여부 지도·점검</li> <li>· 안전사고 조사처리 및 대책 수립 /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li> </ul>
품질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순환·친환경 패키징 등 친환경 경영관련 연구</li> <li>· 제품 품질개선 연구 및 개선규격 설정</li> <li>· 신제품개발연구</li> <li>· 브랜드 운영 전략 수립 및 BI 관리</li> <li>· 브랜드, 용기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li> </ul>
품질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레임 원인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시행</li> <li>· 제품 클레임 발생에 따른 클레임 처리 및 개선 관리</li> <li>· 제품 클레임 예방관리</li> <li>· 제품생산~유통 전 단계 품질점검(inspection) 계획 수립·시행</li> <li>· 부적합품 처리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이행상황 관리</li> <li>· 삼다수 샘플 보관실 관리</li> </ul>



[붙임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